

영등포구의회  
제16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

2012. 6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30호로 2012년 5월 31일 신홍식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 
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구와 동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원 수와  
임원구성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구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및 임원구성 정비

- 구 청소년지도협의회

·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총무 1명 ⇒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2명,  
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(안 제19조제2항)

- 동 청소년지도협의회

· 구성원 20명 이내 ⇒ 25명 이내

· 회장, 부회장, 총무 각 1명 ⇒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 
총무 1명으로 변경(안 제19조제3항)

나.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와 동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보완·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  -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총무 1명에서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2명,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하고,
  -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 지도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고 회장, 부회장, 총무 각 1명에서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총무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,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지원,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,  
  
협의회의 지도위원 증원과 임원구성을 보완·정비하여 조직을 체계화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 
  
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,  
「청소년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: 중구 외 23개 자치구

# 관 련 법 령

## ■ 청소년기본법

**제27조(청소년지도위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■ 청소년기본법시행령

**제26조(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)**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,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,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1.11.18]

## ■ 청소년보호법

###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·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1999.2.5>